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26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18. 12. 11 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안경위

○ 제안자 : 마포구청장

○ 제안일 : 2018. 11. 19

○ 회부일 : 2018. 11. 20 (의안번호: 18 - 122)

2. 개정이유

○ 여성의 생리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하여, 가임기 여성의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월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 제13조의3(할인) 제11호

-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. 이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에 한정한다.

4. 관계법령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(사용료) 및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5. 참고사항

○ 가임기 여성할인 적용 자치구 : 22개

- 할 인 율 : 10%(19개구), 5%(2개구), 기타(1개구)
- 적용연령 : 13~55(13개구), 12~55(7개구), 10~55(2개구)

○ 가임기 여성할인 대상자

-월평균 276명으로 연간 약3,300명 예상

○ 가임기 여성할인으로 수익감소 예상액

-월평균 1,430천으로 연간 17,200천원 예상

6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여성의 생리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감안하여, 가임기 여성의 마포아트센터 수영장 월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조례 제13조의3(할인) 제11호에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일 경우 1개월 이상의 수영장 사용료 할인 규정을 조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은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본 조례안의 목적에도 부합하며 양성평등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